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 「사관」

/ 위원회 뉴스

박용상 위원장, 부산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두바이 AMIC 국제컨퍼런스 참석

2015
07

Vol. 181



일노초

최철훈

- 월간문학 등단
- 제3회 한국해양문학상 수상,
제5회 오륙도문학상 수상
- 계간 종합문예지 <문장2> 발행인
- 시집 『하얀편지』 외 다수

절영도 봉래산 휘돌아 가는 곳
주전자 섬을 부표처럼 띄워놓고
밤새워 설설 끓는 파도는
태종대 간장독 같은 바다를
온통 퍼내고라도
요술 램프 하나는 불 켜겠다 했는데

주름주름
이랑 짓는 바람의 애교만큼이나
갈지자 물결들이 기분 좋게 웃어가며

동백꽃 배꼽 같은 노란 꽃잎들이
쏟아지는 한편으로

안개 주의보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 하나씩 묻어두고 가는
새싹처럼 겸손한 사람들 앞에

국토를 위로하는 애국가 같은
터질 듯한 선홍빛 과녁 하나가
태극기 머리처럼 돌아나고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witter.com/pac_news

홈페이지 | www.pac.or.kr

www.facebook.com/pacnews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Contents

2015 July Vol.181

- 04 역사 속 언론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사관」
- 06 문화가 산책 파도의 표정도 각양각색,
클래식 음악 속의 바다
- 07 古典名句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외是謂過矣
- 08 신 동의보감 바이러스 virus
- 09 상담노트 따뜻한 말 한마디
- 10 특별기고 언론중재법,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 12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 14 조정중재사례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7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3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 사관

1.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사관의 기록

조선의 사관은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원과 함께 부정과 부패가 없는 청직으로 인식되었다. 품계 상으로는 말단이었지만, 한 번 제수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누구나 선호하는 직책이었다.

대간에게 폄하되면 관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그치고, 왕에게 미움 받으면 귀양을 갔지만, 사관에게 한 번 폄하되면 후세에 영원히 전해져 비판되거나 칭송되었다. 이런 점에서 군주를 비롯하여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사관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였으며, 왕도정치에 벗어나는 정책 수립이나 집행, 유교적 명분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사관은 도덕적 객관성을 바탕으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에 따라 보고 들은 바를 기록으로 남겼다. 후대에 교훈을 전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춘추필법의 역사의를 견지하였다. 사실을 기록하면서 더하거나 덜지 않았으며,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직필정신을 고수하였다. 기록 정신이 철저하였던 만큼, 사관의 기개 역시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사관이 작성한 기록(사초)은 조선왕조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사이지만 조선시기로 본다면 당대사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층 관료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 사관의 직필을 방해하려는 사례가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록에는 군주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조정의 관료, 향촌의 유생들까지 시시비비(是是非非)와 연관된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무서워하는 바는 하늘과 사관뿐'이라는 군주의 고백은, 이들의

기록이 어느 정도 상세하고,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군주와 대신들이 권력의 남용을 자제하고 유교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정국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국정의 모든 시행사를 기록으로 남겼던 사관의 기사 활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가 사관의 기록이었던 만큼, 이들의 활동은 서술 퍼런 요즘의 언론 활동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실록은 만대 이후를 기다리는 역사였으며, 왕조차 함부로 볼 수 없었던 역사의 기록, 당대의 예리한 언론활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실록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군주대의 모든 역사 사실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즉 실록의 편찬은 철저한 비밀주의였지만, 기록된 내용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다는 사실에서 더욱 주목된다.

2. 까다로운 사관의 임명

사관은 문신으로서 재(才)·학(學)·식(識) 삼장지재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재'란 역사 서술 능력을 의미하며, '학'은 해박한 역사 지식, '식'은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하게 시비포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 문과의 급제여부는 가문과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였다. 그런데 사관 역임자들은 반드시 문과에 급제해야 했다. 문과 급제자들이 당대 학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이었던 점에서, 사관은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학문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던 것이다. 집안을 살피 흠이 없는 사람, 즉 친가와 처가 쪽에 문제가 없어야 했다. 따라서 조상 중에 부정 축재를 범했거나, 서자 출신이 있으면 임명되지 못하였다.

성종 24년 조위(曹偉)가 '사관을 선발할 적에는 마땅히 박학하고 글 잘하는 선비를 선발해야 할 것인



데, 옛 풍속에 구애되어 만약 가문이 한미하거나 가난한 자이면 비록 삼장지재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백방으로 피하려고 피하고, 본관(예문관)에서도 기꺼이 천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논한 것에서 보듯이, 출신 역시 상당히 고려되었다. 종종 4년에는 부정축재한 관리 허탕(許宕)의 손자 허안국을 승정원에서 가주서(假注書)로 삼고자 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잘못된 인사라고 하면서 승정원에 대한 추고 논의가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사관은 내외 4조를 살핀 뒤, 조상은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절대로 제수되지 못하였다. 미혼자가 사관에 임명되지 못하는 것은 후에 결혼했을 경우 처가 쪽에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적당한 인사라고 판단되어 제수할 때도 신중을 기하였다. 사관의 결원이 생겨 임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시험을 치른 뒤 보충할 정도로 엄격하였다. 마음이 사투하다는 이유로 사관에 적당하지 않거나, 사필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잡아야 한다는 표현처럼 평소의 마음 자세와 정직성도 사관 임명 시 요구되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평상시 동료 간의 원만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였는가의 여부 역시 자격 조건의 하나였다.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 제수되었던 만큼 사관들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문치주의를 지향하는 조선왕조의 중추적인 관료였으며, 양반관료체제를 유지하는 우수한 엘리트 계층이었던 것이다.

3. 사관이 만든 언론(言路)

정치 행위가 벌어지는 모든 자리에 참석하여 국정운영의 사실을 기록하였던 조선의 사관은, 오늘날 정치 현장에서 생생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의 기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기자 중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는가 하면, 국회, 여당과 야당의 출입 기자, 사회부 기자, 교육 및 의학 전문 기자 등 역할과 임무가 다양하고 상당히 전문적이다. 각각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꽃이라고 한다면 정치부 기자가 아닐까? 이들의 활동 현장이 한국현대사가 전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치부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신문의 1면

에 처리되는 요즘처럼, 조선의 사관 역시 정치의 현장에서 최고의 기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은 역사 기록을 중시하였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교적 답변은, 역사를 통해 후대의 평가를 받고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서 후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종교적 경건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신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종교적 경건성이 담긴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자인 왕을 견제했으며, 그 방편의 하나로써 진행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사관의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었다.

역사 기록을 중시하였던 유교에서 바라보는 역사란, 지나간 일의 선악과 시비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 평가를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그런데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공정한 역사 기록을 방해하는 것은 권력이었다. 이때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하려는 자세가 유교적인 역사의식의 기본 정신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교적인 역사의식에 의한 평가의 영원성은 절대 군주인 왕에게조차 대단한 위협이었다. 자신의 행동거지 일체가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진다는 사실에 초연할 수 있는 군주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교적 가치 기준을 근거로 충신 또는 역신이었는지, 난국을 바로잡은 명재상이었는지, 재물만 축적한 탐관오리였는지가 정확하게 평가되었다.

대간에게 탄핵을 받으면 더 이상 관료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관이 작성한 사초에 비판받게 되면 현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후세에 영원히 전해졌기 때문에 대간의 탄핵보다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권력의 남용을 자제하고 유교적인 가치 기준에 준거하여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은 사관의 사초를 우려한 까닭이었다. 군주와 관료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였다는 점에서 사관의 기사 활동과 실록 편찬은 현실 정치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던 언론사 기자들의 활동과 일치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론이었던 것이다.



파도의 표정도 각양각색, 클래식 음악 속의 바다

누구에게나 바다는 낭만의 대상이다. 밤바다, 여름의 밤바다,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설렌다. 그런 바다는 작곡가들에게 영감으로 다가갔다. 한없는 동경의 대상이자 영원의 상징으로,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상으로, 혹은 도피의 공간으로 말이다. 그런 바다를 캔버스에 그리듯 오션지에 음표로 담은 작곡가가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떠오른 느낌과 분위기를 추상적으로 담은 이도 있다. 이번에는 바다를 담은 클래식 음악들을 살펴본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바다는 무엇일까.

● 공포의 바다

바다 같은 상사. 그는 마음씨가 바다 같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이다. 호통을 치니 사무실이 뒤집힌다. 이탈리아의 베르디(1813~1901)가 1887년에 작곡한 오페라 '오텔로'의 서두에 등장하는 바다는 화난 상사의 표정 같다. 그 바다는 성난 포세이돈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간신 이야기의 간교로 자신의 부관 카시오와 부인 데스테모나를 오해하고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 오텔로. 그 비극을 암시라도 하듯이 오케스트라는 바다의 폭풍을 거침없이 묘사하며 서막을 연다. 여기서 폭풍우를 묘사하는 역할은 '윈드머신'이라는 악기의 몫이다. 이 악기는 도·레·미 등과 같은 게이름을 낼 수 없다. 그저 '확확'거리는 거센 소리만 낼 뿐. 이 윈드머신이 거침없이 연주해야 바다를 헤집는 폭풍우의 풍경이 피부로 와 닿는다.

러시아의 림스키-코르사코프(1844~1908)가 1888년에 작곡한 '세헤라자데'에도 바다가 나온다. 이 곡은 모두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소재로 한 곡이다. 가사 한 줄 없는 오케스트라 곡이다. 그런데 그 음들을 듣다보면 소설을 읽는 듯 하나하나 풍경이 그려진다. 꼼꼼하고 치밀한 묘사다. 1악장 '대양과 신밧드의 배'에서 풍량을 묘사한다. 하지만 이 풍량은 앞서 살펴본 '오텔로'에 비하면 중량 미달이다. 역시 비극의 무게는 늘 무거운 법인가 보다.

● 그림 속의 바다

회화와 소설 속의 바다를 음표로 그린 것과 달리, 그림 속 바다를 음표로 그린 작곡가도 있다. 스위스의 아르놀트 비클린(1827~1901)이 1886년에 그린 '죽음의 섬'은 섬뜩하다. 아마도 앞서 살펴본 '오텔로'의 폭풍우처럼 화를 낸 상사에게 혼쭐이 난 부하의 마음은 '죽음의 섬'에 당도해 있을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유럽 아드리아 해에 있다는 전설 속 섬의 이야기를 죽음과 연결시킨 작품이다. 음울한 바다에 떠 있는 섬은 고립과 죽음의 기운을 뿜어낸다.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러시아의 라흐마니노프(1873~1943)는 같은 제목을 차용하여 교향시 '죽음의 섬'을 작곡했고, 1907년에 세상의 빛을 보았다. 역시, 죽음이란 예술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인가 보다. 오케스트라가 뿜어내는 음악은 회화 속의 분위기와 고스란히 닮아 있다.

'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맨 처음에 오는 곡은 프랑스의 드뷔시(1862~1918)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작곡한 교향곡 '바다'이다.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바다 위의 새벽부터 정오까지(1악장)', '물결의 희롱(2악장)', '바람과 바다의 대화(3악장)'로 되어 있다. '교향적 스케치'라는 부제가 함께 붙었을 정도로 회화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곡으로, 우키요에(浮世繪)라고 불리는 일본 판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그림과 판화는 19세기 말에 유럽으로 건너가 인상주의 사조를 낳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림을 보니 배를 덮치려는 듯이 높은 파도와 흰 물결, 그 물결과 어우러지는 날렵한 뱃머리가 시원하게 다가오는 그림이다. 그 유동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잡은 결정체가 드뷔시의 '바다'인 것이다.

라흐마니노프의 '죽음의 섬'이 회화를 음악으로 '복사'한 듯 하다면, 드뷔시의 '바다'는 회화에서 떠올린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그린 곡이다. 따라서 전자는 음악과 회화의 싱크로율이 99퍼센트이다. 드뷔시의 '바다'는 초대형 오케스트라가 약 25분 동안 선사하는 풍성한 화음과 향연을 통해 각자의 머릿속에 바다를 그려볼 수 있다. 상사에게 혼나 '죽음의 섬'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과이불개 過而不改, 시위과의 是謂過矣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는 말이 많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사람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사람은 동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강익실 안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기보다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실수를 되풀이한다.

오늘날 ‘내’가 한 실수만을 쫓아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늦잠을 잔 뒤 급히 나오느라 챙길 것을 놓치기도 하고, 바쁘니까 교통신호의 정지 선을 어기기도 하고,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회의에서 더 합리적인 상대의 의견을 잘못됐다고 우기기도 하고, 오늘 끝내기로 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공자를 성현으로 안다. 하지만 역사적인 공자는 허점투성이를 지닌 보통 사람이었다. 그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실수를 되풀이했다. 그는 실수를 할 때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수를 한 이상 솔직하게 시인해야지. 실수를 인정하고 원인을 따져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다.

그 결과 그는 실수와 관련해서 새겨볼 만한 말을 남겼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고쳐야지 하면서 실제로 고치지 않으려고 버티지 마라.”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

공자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잘못을 해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잘못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의 잘못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제자 안연은 공자가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 하지 말라”라는 불이과(不貳過)라고 말했다. 안연은 잘못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으면 금방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멋지게 포착하고 있다. 언론이 특종 경쟁을 벌이느라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여 오보를 낸다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그만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진실을 보도한다는 언론의 책무는 둘째 치고 언론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에 당도한 마음을 풀기 위해 ‘바다’를 택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두 곡을 담은 음반 재킷은 영감을 주었던 그림을 신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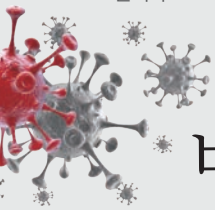
● 희망과 신비 그리고 사랑의 바다

우리가 바다를 찾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존재와 대면한 뒤, 희망을 품기 위해서다. 바다는 우리의 막힌 가슴을 뽕뽕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어울리는 곡은 영국의 본 윌리엄스(1872~1958)가 1909년에 작곡한 교향곡 1번 ‘바다의 교향곡’이다. 미국의 국민시인 윌트 휘트먼(1819~1892)의 시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합창단의 가사로 차용한 이 곡 속의 바다는 ‘죽음을 극복한 인간 승리’, ‘미지의 영적인 세계로의 출범’ 등을 상징한다. 바다의 신비로움을 담은 2악장도 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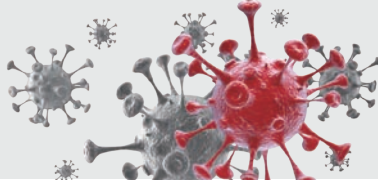
영국의 구스타브 홀스트(1874~1934)는 ‘행성’ 모음곡이라는 교향곡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1920년에 초연된 곡으로, 홀스트는 오케스트라 특유의 뽕뽕한 사운드 효과를 기가 막히게 구사한다. 총 7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마지막 악장에는 ‘해왕성(Neptune)’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넵툰(Neptune)은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넵투누스(Neptunus)의 이름을 딴 것. 그래서 바다(海)의 왕(王)을 그대로 해석해서 해왕성(海王星)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악장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여성합창은 바다 속을 누비는 신비한 인어의 모습을 표현한다.

바다와 잇닿은 항구에 발판을 둔 음악들은 다른 음악들보다 감정의 파고(波高)가 더욱 높은 것 같다. 특히 지중해로 들어서면 바다는 찬란한 태양과 만나 또 다른 생명력을 얻는다. 햇빛 찬란한 이탈리아 나폴리의 민요들. 그 중 ‘산타 루치아’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그려진 사랑 노래들은 늘 한여름의 추억을 장식한다. 올 여름, 사랑하는 이와 같이 들어보자. 바다를 눈앞에 두고.





바이러스 virus



‘월드위Z’라는 영화가 있다. 어느 날 좀비 바이러스가 출몰했는데, 그 좀비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힘을 초인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 만큼 너무나도 미세한 크기라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균보다도 더 작은데도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 질환 중에 하나가 소아마비(polio)로, 소아마비 퇴치를 위하여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다.

1918년도 유럽 지역에 스페인 독감(H1N1)이 유행했을 때, 최소 2천만 명에서부터 최대 5천만 명의 사상자가 생겨났었다. 그 당시에는 독감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그 이후 1957년도에는 아시안독감(H2N2), 1968년도에는 홍콩 독감(H3N2) 그리고 사스(SARS), 돼지독감, 조류독감 등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최근에는 메르스(MERS)라는 독감이 중동에서 출현하여 한국에까지 유행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 조류독감이 퍼졌었는데, 그때 양계장을 소독하고 수많은 닭과 오리들 땅에 파묻으면서 독감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뉴스로 통해서 본 적이 있다. 금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메르스라 이름 하는 바이러스는 중동 지역의 낙타나 박쥐에게 있던 동물을 숙주로 하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바다를 건너 한국에까지 전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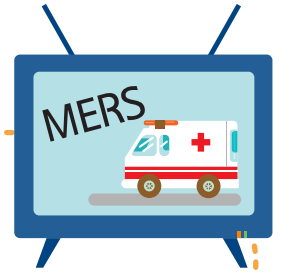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독감들이 돌았고 보건 당국에서는 미리 미리 백신을 접종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해왔었는데, 이번 메르스의 경우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예방접종을 통해 몸속에서 미리 인체가 바이러스를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항체(antibody)를 신속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감염은 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눈·코·입을 비빌 때에 체내에 침투할 수 있고, 독감 걸린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근처에 있거나 접촉을 할 때 옆에서 감염될 수 있다. 인체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면역과 관련된 기능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게 된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마늘, 생강, 고추, 양파, 대파, 당근, 계피, 딸기, 버섯, 케일, 수박 등 천연의 채소들이 면역을 증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여러 한약 처방 중에 쌍화탕, 보중익기탕, 자음강화탕, 삼소음, 소청룡탕 등등의 처방들은 독감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평소 잘 먹어두어야 전투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평소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해야 이겨낼 수가 있다. 또한 바깥 활동을 줄이고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따뜻한 말 한마디



메르스 사태가 한 달 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의 대부분은 메르스 관련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되는 뉴스가 있을 때면 관련 보도에 대한 신청도 줄을 잇는 것이 상담팀 근무로 얻어진 경험칙. 메르스 관련 보도내용을 살피며 상담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신청인은 사실 응급구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 방송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았다. 사실 응급구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보도해주겠다고 했단다.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고 했던가. 안 그래도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주기를 학수고 대하던 업체는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했고, 앰불런스의 안팎이며 내부 시설과 장비까지 모두 살살이 촬영하도록 협조했단다.

하지만 며칠 후, 신청인은 뉴스를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사실 응급구조업체가 메르스 확진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이송했고, 그 후에도 여타의 방역조치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에 신청인 업체의 앰불런스가 방영되고 있었다.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으니 오죽이나 구석구석 잘 찍었겠는가. 앰불런스에 선행하게 새겨진 신청인 업체의 로고는 물론이고, 담요며 장비마다 새겨진 이름까지 반복적으로 신청인 업체를 노출했다. 이건 누가 봐도 신청인 업체에서 메르스 환자를 무방비로 이송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뉴스였다. 정작 신청인 업체는 메르스 환자를 본 적조차 없는데 말이다.

대경실색한 신청인이 기자에게 전화하여 따지자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 하지만 도대체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인지 의문이란다. 수화기 저편에서 열변을 토하던 신청인은 이제 숯세 울먹이기 시작한다.

“그런 뉴스가 나갔으니 누가 우리 앰불런스를 이용하겠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는 망하겠지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50명이네요. 직원 한 사람당 식구 4명이 딸려있다고 가정하면 200명이네요. 기자는 그 뉴스로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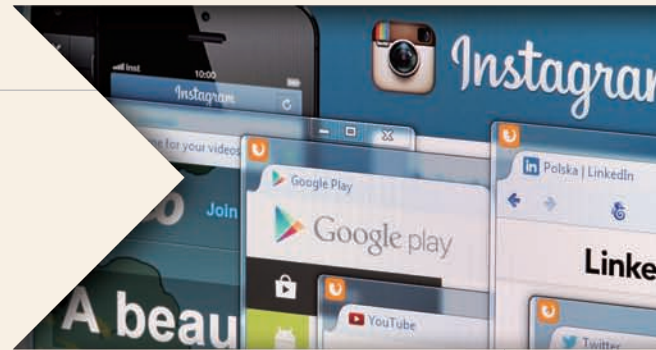
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볼지 한번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이건 미안하다는 말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물론 방송사도 나름의 고충이나 고민은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최대의 특종이라도 자료화면이 없으면 내보낼 수 없는 것이 방송의 속성이다 보니 때때로 그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기 전 국민의 아목이 집중된 사건과 연관 지어 아무 관련 없는 업체의 영상을 내보낸 건, 다급했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무마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수화기 저편에서 전해지는 마음고생에 깊이 공감되어 어느덧 나도 신청인과 함께 탄식하고 맞장구를 치게 된다. “세상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쩔 이런 일이...” 내가 덩달아 속상해하는 것이 느껴져서인지 신청인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아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렸다. 보도내용과 신청인 업체는 전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도, 명예훼손적 보도로 인해 신청인 업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듣던 신청인은 전화를 끊기 전에 내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솔직히 전화를 걸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우리 말을 안 믿어주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믿어주시고 공감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나요.”

상담업무를 하면서 때때로, 신청인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곤 한다.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후 세상이 모두 자신을 오해하고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을 때,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건 법률적인 지식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보다 일단 나는 당신의 말을 다 믿고 있으며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어쩌면 언론중재위원회 상담팀이 건네는 위로와 공감은 막막한 상황을 헤치고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내밀어 잡아주는 손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다.





언론중재법,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 달 28일 언론중재법(정식 명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0번째 생일을 맞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이다. 언론환경에도 그 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이야기지만,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에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안'과 같은 인터넷신문이 뉴미디어였다. 그랬던 인터넷신문이 올드해진 지 이미 오래다.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IT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편당뉴스'니 하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뉴스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언론중재법은 포털뉴스, IPTV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시대를 맞아 급격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걸맞은 제도로 하기에는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젊은 여성 두 사람이 근사한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다. 한참 동안 이어지던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남자'로 옮겨간다.

A: 한 5천 이상은 벌어야지 그래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B: 나를 위해서?

A: 차는 있어?

B: 차 종류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외제차는 아냐.

우리 시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미덕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다들 고액 연봉에 외제차를 꿈꾸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라면 어떨까?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당 방송사 인터넷게시판은 온갖 악플로 도배가 된다. 게다가, 비난을 유발한 문제의 멘트('연봉'과 '외제차')는 연출의 결과물이었을 뿐 실상 그녀들의 진심이 아니었다. 약간의 출연료를 받고 담당 PD의 지시에 따라 의도된 멘트를 날렸을 뿐인 그녀들은 그래서 억울하다. 심지어, 방송 촬영 직후 문제의 멘트를 빼달라고 했음에도 이들의 요청은 무시되었다.

문제 있는 방송과 악플로 인해 이중으로 상처 입은 두 사람은 피해를 구제 받고자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과연 이들이 입은 피해는 온전히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의 피해만 구제받을 수 있다. 문제 있는 '방송'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정정 또는 해명보도 정도가 가능하다. '악플'과 블로그·SNS 등에 게시되어 있는 방송 '영상 삭제'와 같은 문제까지 해결하기 원한다면 번거롭겠지만 별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환경 하에서 통합적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 개정 필요

- 펌글,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도 가능해야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통합적 언론보도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 쉽고 편리했다. 그러나 앞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야기는 또 달라지고 있다. 뉴스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



로 이동하는 동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펄클, 댓글 등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고 당초 언론중재법이 의도했던 통합적 피해구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언론중재법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인격권에 기반 침해배제청구권을 명문의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허위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신문기사의 삭제를 인정했다(2010다60950). 이것은 기존의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손해배상에 비해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의 피해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복제나 전파가 쉬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 하에서 보다 활용도가 높은 권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법 내에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반 침해배제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침해배제청구권은 허위이거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한 기사, 사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 보도-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상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관해서 삭제·수정·보완 등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 권리는 그 속성상 인터넷에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등 침해가 계속되는 한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제척기간·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기사에 달린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 또한 언론조정중재에 포함시켜도 좋겠다. 앞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환경 하에서 기사와 관련한 피해는 언론보도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기사에 달린 댓글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기사 외에도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원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현행법 하에서 이중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댓글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피해구제를 호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괄적 원스톱서비스가 마련된다면 피해자의 번거로움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대법원(2008다53812)과 유럽인권재판소(Delfi 판결)는 명예훼손적 댓글을 방치한 관리자(포털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댓글 관련한 피해구제절차는 댓글 란 관리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을 쓴 사람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댓글 게시자가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댓글과 마찬가지로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또한 언론조정중재에 포함시켜야 한다. 복제와 전파가 용이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하에서 복제 기사로 인한 피해 또한 큰 문제다. 특히, 원 기사의 위법성이 조정·중재·재판 등 공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면 그와 동일한 복제 기사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피해구제절차가 간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인 절차에서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라고 한다면, 블로그나 카페·SNS 등에 게시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복제 기사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피해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포털검색 결과에서 문제된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검색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다양한 피해구제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검색될 수 없도록 하지 않으면 진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문제 있는 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검색사업자에게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으로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넷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책 마련” 강조 - 박용상 위원장, 부산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6월 5일 부산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산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언론 피해구제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콘텐츠가 생산·소비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언론사 대표들은 인터넷 상의 뉴스 베끼기와 어뷰징의 폐단을 지적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펌 기사나 악성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의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언론중재제도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된 현행 법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정보도가 이뤄진 후에도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상에서 복제·전파되거나 위법한 뉴스댓글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한 분쟁 조정 등 언론보도로 야기된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상 위원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인터뷰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6월 23일 미디어 전문 비평자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특성에 맞춰 언론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법성이 확인된 보

도에 대한 복제 및 전파기사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두바이에서 열린 ‘AMIC 국제컨퍼런스’ 참석

위원회는 2015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방문하여 국가언론평의회(NMC)를 시찰하고, 아시아 미디어 정보 커뮤니케이션센터(AMIC)가 주최하는 제24회 AMIC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방문단은 오재성 중재부장(서울 제7중재부), 박성희 중재위원(서울 제8중재부), 남

부희 중재위원(경남중재부)으로 구성됐으며 이미경 부산사무소장, 박진규 조사관이 수행자로 동행했다.

방문단이 참가한 AMIC 국제컨퍼런스는 ‘E-Asia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가치, 기술과 도전(Communicating in an E-Asia: values, technologies and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온 약 250여명의 언론학자 등이 참석했다. 총 4일에 걸쳐 37개의 다양한 소 주제로 발제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언론자유의 과제’, ‘미디어 민감성과 언론의 책임’, ‘뉴미디어 윤리와 담론’ 등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왼쪽부터 남부희 중재위원, 박성희 중재위원, UAE국가언론평의회 Ayman Khasawneh 법무보좌관, 오재성 중재부장, 이미경 부산사무소장, 박진규 조사관

위원동정
— COMMISSIONERS

광주지역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6월 30일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 및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인정한 기사삭제청구권을 권리침해적 온라인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해온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조경완 교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도,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난 보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라며 인터넷 시대의 피해구제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광주방송 박태명 편성제작국장은 “잊혀질 권리 차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허용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도의 기록적 가치 등의 법익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언론계, 학계,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언론계, 학계, 주요 관계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6월 4일 대한적십자사 용산적십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 참여자들은 강사로부터 제빵 교육을 받고 빵 만들기과 배달용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함께 했으며, 이 날 만들어진 4백 여개의 빵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 취임



이영덕 위원(서울제7중재부,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6월 12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제3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 원장은 KBS이사,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경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장 재선임



남부희 위원(경남중재부, 전 경남신문 논설주간이사)은 6월 18일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6월 17일까지이다.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전면 개편



위원회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교육신청안내 홈페이지인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화면크기에 따라 페이지가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기기에서 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 인터넷기자 대상 교육 실시

위원회는 6월 5일 광주 주월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에 위치한 위원회 광주교육장에서 광주·전남 지역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례와 판례로 보는 언론보도 분쟁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전남인터넷신문을 비롯한 6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15명이 참석했다.

■ 패널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방송사, 반론보도로 합의

A방송사는 인터넷신문 기자인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악플러들에게 고소를 남발하여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패널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신공격 및 성적지향(性的指向)을 비하하는 게시글이 80만 건에 이르러 고소하게 된 것이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난글을 먼저 유도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반론·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측은 해당 보도는 신청인의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지 신청인이 고소남발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이 고소남발한 것처럼 파악된다고 지적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자를 설득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반론보도문이 해당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 검찰 수사 중인 사안 일방적 보도, 반론보도문 게재

B신문은 신청인인 지역방송사가 이미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옥 건너편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고 결국 거액의 협찬 계약을 맺었는데, 그 중 일부를 신청인 방송사 사장 및 간부가 착복했다는 의혹을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의혹은 신청인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된 직원의 악의적인 제보에 따른 보도로, 현재 보도내용에 관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인데도 신청인에게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보도 당시 의혹 수준에 불과한 사안을 수차례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반론이 미흡하게 반영되어 신청인의 반론보도가 게재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 확정이 불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B신문의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이 각 게재됐다.

■ 블랙박스 영상 속 신원 노출 방송사, 손해배상

C방송사는 아침 뉴스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들로 구성된 코너를 방송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주차한 차량이 저절로 도랑으로 빠지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지인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조정대상보도 영상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인을 '김여사' 등으로 조롱한 댓글이 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블랙박스에 담긴 신청인의 모습이 불분명해 신원을 알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방송 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배상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과오를 인정했으며, 신청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심리 참석을 위해 수고를 들인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1백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맛집'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D방송사는 음식·식당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기로 유명한 모 프로그램에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일부 소고기 정육식당에서 용량·등급 등을 허위로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 방송을 홍보하기 위한 예고편을 2회에 걸쳐 방송했는데, 이 예고편에는 방송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식당의 내부 전경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1초 이하의 순간으로 노출됐다.

이에 대해 신청인 식당은 맛집으로 유명해 그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모자이크된 내부 전경만으로도 특정되었고, 실제 방송은 순간이었으나 대중들이 많이 검색하는 포털사이트 게시판·블로그 등에 이를 캡처한 장면과 신청인 식당 상호가 댓글 등으로 게재됨으로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박미경-

바쁜 일상 속에서 매월 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을 통하여 짧게나마 휴식 시간을 가지며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이 소통하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늘 좋은 소식 많이 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김희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한가로운 어느 날의 오후를 「언론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과거 「언론  사람」을 보면서 건강상식과 명사의 인터뷰 등을 흥미 있게 읽던 저에게 오늘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를 친숙하게 사용하던 저 또한 SNS에 떠다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기사화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기자분들 또한 SNS에 게재된 이야기만 보고 기사를 쓰셨을 거라 생각되었는데 이 내용들이 확인된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6월호엔 이에 대해서 구율화 변호사님이 깔끔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조금 더 흥미로운 「언론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알찬 정보로 가득한 「언론  사람」 기대할게요.

BOOK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201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59건에 대한 통계 분석과 주요 판례 32건을 수록한 「2014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분석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구취지를 분석해 선호되는 피해구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21건(42.6%),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117건(41.2%)으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소송 건수를 보면 인터넷매체가 전체의 46.1%인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간신문 67건(23.6%), 방송 44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언론조정 사건의 44.3%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분쟁이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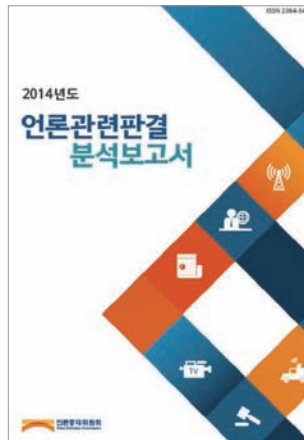
원고 승소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52.8%로 집계됐다. 매체유형별로는 방송을 피고로 한 사건이 50.0%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일간신문을 피고로 한 경우, 원고승소율이 29.9%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법원은 판결을 통해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높게 요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262건 중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95건을 살펴보면 인용액 평균은 약 885만원, 중앙값은 700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1,000만 원이었다. 작년 사건 중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40,495,800원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 소속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재산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이었다.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 중 위원회를 거쳐 간 사건은 얼마나 될까?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조정을 거쳐 간 사건은 97건으로, 전체건수(분석판결 총 159건을 매체별/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451건임)의 21.5%로 나타났다. 이를 위원회 조정결과별 원고승소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정을같은하는결정이 내려진 사건 26건의 원고승소는 19건으로 73.1%에 달했고,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 60건의 원고승소는 34건으로 56.7%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 확인' 결정문도 수록했다. 본 보고서가 현직 언론인들과 법조인들뿐 아니라 위원회 직원들에게도 늘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기원해 본다.

박은영(교육콘텐츠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일반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합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에 게재할 일반논문을 공모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구주제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 응모자격 :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 기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 원고마감 : 2015년 8월 20일(목)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 논문접수 :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원고료(200만 원)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 바랍니다.